

#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05,269,910	108,158,097
일반회계	3,111,821,222	93,354,637
특별회계	493,448,688	14,803,461
공기업특별회계	231,874,467	6,956,234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31,874,467	6,956,234
기타특별회계	261,574,221	7,847,227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8,716,900	261,507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4,060,000	721,8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966,176	6,028,985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3,361,145	400,83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00,000	285,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970,000	149,1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197,29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6,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